남양주시 공고 제2023-104호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상생기반대응형 -

「2023년 창업청년 희망플러스사업」 창업청년 모집 공고

남양주시는 지역 내 창업청년의 창업 초기 성장 지원을 통하여 지역 정착 및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023년 창업청년 희망플러스사업」**에 참여할 창업청년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3. 1. 18.

남 양 주 시 장

1 모집개요

1. **사 업 명:** 창업청년 희망플러스사업
2. **사업기간:** 2023. 03.~2023. 12. (총 사업기간은 최대 2년)
3.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남양주시 내 창업 7년 이내의 청년 창업가

① 지역기준: (사 업 장) 공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 (창업청년) 공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② 나이기준: (창업청년)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지역 전략 산업, 디지털·정보통신기술 등 혁신 산업, 지식서비스 산업, 지역 특산물 분야, 기타 지역 특화에 준하는 분야 등의 창업

- 가구.섬유 산업 분야 - 디지털.정보통신기술 분야 - 디자인.출판.광고.영상.공예 등 지식.문화 산업 분야 - 과일.채소.임산물 등 지역 특산물 분야 등 - 기타 지역 특화 분야에 준하는 창업 분야

4. **모집규모:** 2명

5. 지원내용

❍ (1년차) 1인당 창업 지원금 1,500만원 및 창업 컨설팅비 50만원 한도 내 지원, 복지포인트 월 10만원 지원

※ 공간임차료, 시제품제작비, 홍보비 및 재무컨설팅비 등 지원(인건비 제외)

※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지원 불가

❍ (2년차) 청년 추가(신규) 채용 시 해당 청년 인건비 1년(월 180만원 한도 내) 지원

※ 청년 추가 채용 요건 충족을 위해 기존 직원 해고 후 참여 시 지원 불가

※ 청년 임금의 10% 이상,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은 기업 부담

※ 2년차 인건비는 1년차 사업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1. **접수기간:** 2023. 1. 18.(수)~2. 3.(금) 18:00까지 ※ 토·일요일 제외
2. **접수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남양주시청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 (☎031-590-8539)

-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본관 3층 청년정책과
- 이메일: ykim245@korea.kr

3.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에 한함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동의서, 참여사업장 확인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입·변동일 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및 가입자명부 각 1부
- 4대보험 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2년간) 1부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최근 1년간 / 퇴직자 포함) 1부
-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청년 고용원 재직증명서 1부 ※ 해당 기업에 한함.

3 배제대상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부정수급으로 제재받은 이력이 있거나,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 공개 중인 곳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된 사업장

○ 2022년~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신규유형)에 참여 중인 사업장 (중복 참여 불가)

○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사업 연속 2년 초과 참여 사업장
단, 기존유형(지역정착지원형) 사업 참여 청년 정규직 고용 유지 시 가능

○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단, 동일한 지원 항목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연체 중인 사업장

○ 사업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 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장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장

※ 국세,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수수료, 사용료, 부담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배제대상은 아니나 사업 후순위 조정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붙임 서식 참여사업장 확인서의 제외대상 사업장

○ 남양주시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4 심사기준 및 선발방법

○ 심사기준: 사업수행 역량, 창업 분야의 독창성·기술성·시장성, 사업계획의 충실성·합리성, 고용창출 가능성 등

※ 가점기준: 청년 고용원 수, 사업의 지속성(창업 경과 연수), 남양주시 거주기간

※ 감점기준: 동일유형 재정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이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중 중도포기 여부

❍ 심사방법

- 1차 심사: 필수 신청서류 제출 등 적격여부 검토
- 2차 심사: 심사위원 면접평가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일정 통보하며, 2차 면접심사 대상은 심사자료(사업추진계획 PPT)를 사전 제출하여야 함.

❍ 선발방법

- 심사기준표 점수 합산평정 후 상위점수순으로 선발
- 중도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 우선 선발

❍ 선발결과: 최종 선발자 개별 통보(2023. 2. 20.까지)

5 유의사항

(가) 창업청년 희망플러스사업 참여청년은 남양주시와 「창업청년 희망플러스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협약 체결 후라도 창업청년 희망플러스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지원금 지원 중단, 사업 참여 배제,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및 고발 등)될 수 있습니다.

(다) 창업청년 희망플러스사업 신청서 등에 기재사항 누락,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인의 책임으로 하며, 이로 인해 선발 시 감점, 사업 참여 배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및 선정에 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마)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을 따릅니다.

6 문의: 남양주시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031-590-8539)

※ 접수번호:

창업청년 희망플러스사업 참여신청서

대표자 정보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 메 일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휴대전화번호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설 립 일			고용원수 (고용보험가입기준)	명
분 야	☐ 가구·섬유 산업 분야		☐ 디지털·정보통신기술 분야	
	☐ 디자인출판광고영상공예 등 지식문화 분야		☐ 과일채소임산물 등 지역 특산물 분야	
	☐ 기타 지역 특화 분야에 준하는 창업 분야: _____			
매 출 액	(2021년) 백만원 (2022년) 백만원		자산총액	(2021년) 백만원 (2022년) 백만원

정부 및 지자체 지원현황 (3년 이내)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한 경우 필수 기재	1. 지원기관	2. 지원내용	3. 지원기간	4. 지원금액(백만원)

사업신청 담당자	성명		이메일	
	전화		휴대전화	

상기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창업청년 희망플러스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사업장명:

대 표 자: (날인 또는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

[제출서류]

1.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동의서, 참여사업장 확인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초본(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입·변동일 포함)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 1부
4.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및 가입자명부 각 1부
5. 4대보험 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6.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2년간) 1부
7.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최근 1년간 / 퇴직자 포함) 각 1부
8. 국세 완납증명서 1부
9. 고용원 재직증명서 1부 ※ 해당 기업에 한함.

사업계획서

□ 기본 정보

업체명		창업분야	*※ 참여신청서와 동일하게 기재*
		휴대전화번호	
성명		이메일	

□ 창업 동기 및 전문성

창업동기 및 전문성	*※ 창업동기를 자유롭게 기술* *자신의 전문성(전공, 경력, 입상실적 등)을 자유롭게 기술*

□ 사업 목표

사업 목표	*※ 사업 목표를 자유롭게 기술*

□ 사업 내용

사업 내용	1. 창업 아이템 개요 *※ 창업 아이템에 대해 기술*
	2. 아이템의 창의성, 독창성, 기술성 *※ 아이템의 창의성, 경쟁 서비스/제품과의 차별성 또는 기술의 독창성 등 기술*
	3. 아이템의 성장 가능성 *※ 아이템 관련 시장규모, 수요자, 경쟁력 등 창업 초기 시장진입 가능성과 지속적인 매출발생 가능성 기술*
	4. 지역사회 기여도, 고용창출 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 향후 추진계획

<table>
<tr><td>사업계획
및 목표</td><td>※ 분기별 사업운영 성과목표 포함하여 상세히 작성</td></tr>
<tr><td>지원금
운용
계획</td><td>○ 정부지원금 지원의 필요성

○ 지원금 운용 계획 (예시) (단위: 천원)
<table>
<tr><th rowspan="2">세부항목</th><th colspan="3">총 소요예산</th><th rowspan="2">산출기초
(자세히 기술)</th><th rowspan="2">비고</th></tr>
<tr><th>계</th><th>지원금</th><th>자부담</th></tr>
<tr><td></td><td>15,500</td><td>15,500</td><td>–</td><td></td><td></td></tr>
<tr><td>임차료</td><td>12,000</td><td>12,000</td><td>–</td><td>1,000천원 × 12개월</td><td></td></tr>
<tr><td>시제품제작비</td><td>1,000</td><td>1,000</td><td>–</td><td>시제품 재료비
1,000천원 × 1회</td><td></td></tr>
<tr><td>홍보마케팅비</td><td>2,000</td><td>2,000</td><td>–</td><td>동영상 광고제작 및 노출 비용
1,000천원 × 2회</td><td></td></tr>
<tr><td>컨설팅비</td><td>500</td><td>500</td><td>–</td><td>창업 운영 컨설팅비
250천원 × 2회</td><td></td></tr>
</table>

※ 위 예시를 참고하여 세부항목별 총계와 산출기초, 견적서가 일치되도록 작성</td></tr>
</table>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사업장 정보와 대표자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및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수집항목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매출액, 고용인원에 관한 자료, 납세내역 등 고용조정 및 임금체불여부 등	동의일로부터 5년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동의일로부터 5년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추후 상기 제한대상이 지원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 (대표자: (서명))

※ 본 동의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각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및 대표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주 민 등 록 번 호	-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남양주시장 귀하

참여사업장 확인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업 종		전화번호	
소 재 지			

본 사업장은 **2023년 창업청년 희망플러스사업** 신청과 관련, 아래의 참여기업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부 보조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해당여부는 여, 부 중 택1 하여 "O" 표기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연속 참여 기간의 2년 초과	여 , 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3년 신규유형간 중복 신청 여부 ※ (현재 참여 중 기존 사업명 기재 :)* * 기존유형(지역정착지원형)과 신규유형간의 중복 참여는 예외 인정	여 , 부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관련 지원 여부	여 , 부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 여부	여 , 부
임금체불 사업장으로 명단 공개 중 여부	여 , 부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및 보험료 연체 중인 사업장	여 , 부
사업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 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 있는 사업장	여 , 부
인위적 감원 및 지원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지원 제한 기간 등의 경과 여부	여 , 부 , 해당없음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시간 위반 여부 등	여 , 부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여부	여 , 부

2023년 월 일

확 인 자(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동의서]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의거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자산과 부채(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포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조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대표자(법인)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2023년 창업청년 희망플러스사업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청년정책과에서 징수과로 공문요청	1년

※ 위와 같이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단체 및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 및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단체 및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여 부	단체명	대표자(법인)명	서명 또는 날인
□ 예, □ 아니오			

2023년 월 일

남양주시장 귀하